

서울특별시 건설공사장 안전지수 평가

2026. 4.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 건설공사장 안전지수 평가 규칙

규칙 제정: 2026. 3. 9.

제1장 총칙

1.1 목적

본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발주하거나 관리하는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정의

이 평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본 규칙 및 평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과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적용범위

본부에서 발주하여 공사 중인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1.4 평가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① 실질적인 작업공정이 없어 근로자 면담 및 안전시설물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 ② 수방기간(하천 공사 등) 또는 기상 악화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경우
- ③ 설계변경, 용지 보상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
- ④ 그 밖에 현장 여건 등으로 정상적인 평가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2장 평가 체계 및 운영

2.1 평가 실시부서

안전지수 평가는 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2.2 평가 방법 및 인원

평가는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규모, 평가자의 역량, 인사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인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평가는 서면심사, 면담심사, 현장실사 확인의 단계를 거쳐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2.3 평가 주기 및 시기

공사장별 월 1회 평가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평가 방법 및 기준

3.1 점수 산정 방식

- 1) [별표 1]의 '안전지수 평가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2) 평가항목 중 공사 특성상 구조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여 결측 처리되는 경우, 동일 평가영역 내 타 세부항목의 획득 점수를 반영하여 환산 점수를 부여한다.
[(해당 영역 실제 획득 점수 ÷ 획득 가능한 총점) × 결측 항목 배점]
- 3)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4)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적용한다.

3.2 등급 부여 기준

다음과 같이 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90점이상	80점~89점	70점~79점	60점~69점	60점 미만

제4장 평가 절차 및 결과 확정

4.1 현장 점검 및 서류 심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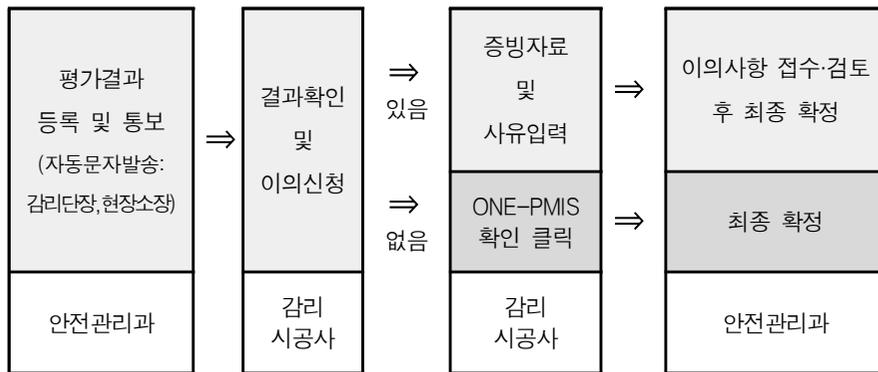
- 1) 현장 실사 점검은 안전관리과 정기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실사 시 근로자 면담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며 가설구조물,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여 평가한다.
- 2) 서류 평가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작성된 경우, 해당 항목은 최하 점수를 부여한다.

4.2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1) 평가 주관 부서는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해 결과를 통보한다.
- 2)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평가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ONE-PMIS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3 평가 결과의 심의 및 확정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의를 완료된 경우 최종 등급을 확정하고, 이를 ONE-PMIS에 등록한 후 해당 현장 담당 부서로 통보한다.



제5장 평가 결과 활용

5.1 우수 공사장 인센티브

최근 3개월간 연속하여 '매우 우수(90점 이상)' 등급을 받은 현장은 다음 달 안전지수 평가 및 안전관리과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은 자율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5.2 미흡 공사장 특별 관리

- 1) 즉시 작업중지: 당월 평가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사고 위험이 극히 높은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시킨다.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개선 계획서를 안전관리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강력 제재: 최근 3개월 평균 점수가 65점 미만인 현장은 안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안전점검 실시, 부실벌점 부과,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의뢰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

5.3 본부 정책 연계 및 결과 공개

- 1) 평가 결과는 본부 상·하반기 우수공사장(시장표창 및 경고면제) 선정 시 핵심 지표로 활용한다.
- 2) 벌점 심의위원회 개최시 현장 실태 자료로 활용 된다.
- 3)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평가 시, 해당 현장의 공사 전 기간 안전지수 평균 점수를 산정하여 반영한다. 단,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착수된 공사부터 적용한다.
- 4) 평가 결과와 등급은 ONE-PMIS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부 칙 <2026. 3. 9.>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공사장 안전지수 총괄표			
평가영역	소계	평가지표	배점
A. 작업자 안전의식	18	A-1. 위험성 평가 참여	8
		A-2. 보호구 착용	3
		A-3. 작업계획서 이행	5
		A-4. 위험상황 대응	2
B. 관리자 직무수행	24	B-1. 작업 안전관리 활동	9
		B-2. 안전점검 활동	4
		B-3. 위험성평가 감독 (감리)	5
		B-4.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감리)	2
		B-5. 안전 문서 작성	4
C. 작업 환경	8	C-1. 안전시설 설치	2
		C-2. 시민보호 조치	3
		C-3. 근로자 편의시설	3
		C-4.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성과	-
D. 시설·장비	11	D-1. 가설구조물 관리	-
		D-2. 건설기계 감독	4
		D-3. 공도구 점검	5
		D-4. 스마트 안전기술 설치	2
E. 고위험 관리	16	E-1. 위험작업허가제 시행 (시공사)	6
		E-2. 위험공종 작업 감독 (감리)	6
		E-3. 복합 공종의 안전업무 조정	4
F. 작업계획	13	F-1. 작업계획 소통	3
		F-2. 사전 작업 협의 (감리)	3
		F-3. 시공·작업계획서 수립	7
G. 안전교육	10	G-1. T.B.M 활동 수준	3
		G-2. 교육 활동 수준	7
총 점			100

□ A. 작업자 안전의식

A-1. 위험성평가 참여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8	Yes	No	N/A	
A-1 위험성 평가 참여	<p>○ 지표 정의</p> <p>- 위험성평가 수행시 근로자의 참여 수준을 평가</p> <p>○ 해 설</p> <p>-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p> <p>-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활동 사항</p> <p>① (사전준비)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p> <p>②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근로자 제안 반영</p> <p>③ (위험성결정)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p> <p>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정기 회의시 공유</p> <p>⑤ (위험성평가 공유) TBM, 게시, 주지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한다</p> <p>※근거 : 산안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 관한지침</p>	서면 (DR)	1.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1					
		서면 (DR)	2. 근로자는 이전의 수행한 위험성 평가 실행 결과를 위험성평가 회의시 공유 받고 있음	1					
		서면 (DR)	3.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시 위험요인을 제안하였음 ※ 점검 당일 적용되는 위험성평가 기간의 자료만 인정하며, 제안한 기록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2					
		면담 (IP)	4.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정보를 확인 하는 방법(장소)을 알고 있음 (정보: 작업장의 위험요인, 감소대책, 위험성 결정 사항)	2					
		면담 (IP)	5. 근로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내용: 위험 요인, 예방 대책)	2					
					계				

A-2. 보호구 착용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3	Yes	No	N/A		점수															
A-2. 보호구 착용	<p>○ 지표 정의</p> <p>- 보호구 관리 및 근로자 착용 지도·감독 수준을 평가</p> <p>○ 해 설</p> <p>-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 공사팀은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하여 교육·지도해야 한다.</p> <p>-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p>	실사 (PI)	1. 작업환경에 맞지 않는 보호구 착용 또는 불량하게 착용한 근로자 적발시 1명당 감점 : -2 (턱끈, 안전대 부품 없음, 안전모 안에 캡모자(야구모자 등)겹착용 등)	최대 -6																					
		서면 (DR) 실사 (PI)	2.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 그네식 안전대 ’ 를 지급하고 있음	2																					
		서면 (DR)	3. 보호구 지급 대장 관리 유·무 (근로자 공중,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여부, 지급 일자, 자필 서명 必)	1																					
		<table border="1"> <thead> <tr> <th>작업환경</th> <th>착용·지급 보호구</th> </tr> </thead> <tbody> <tr> <td>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td> <td>안전모</td> </tr> <tr> <td>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td> <td>안전대</td> </tr> <tr> <td>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td> <td>안전화</td> </tr> <tr> <td>물체가 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td> <td>보안경</td> </tr> <tr> <td>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td> <td>보안면</td> </tr> <tr> <td>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td> <td>절연용보호구</td> </tr> <tr> <td>밀폐공간 작업</td> <td>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td> </tr> <tr> <td>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td> <td>방진마스크</td> </tr> </tbody> </table> <p>※근거 : 산안법 제6조, 제15조, 기준 규칙 제32조</p>		작업환경	착용·지급 보호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물체가 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보호구	밀폐공간 작업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작업환경	착용·지급 보호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물체가 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보호구																								
밀폐공간 작업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계

A-3. 작업계획서 이행 실태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5	Yes	No	N/A		점수																			
A-3. 작업 계획서 이행	<p>○ 지표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자들이 계획수립·시행 단계에 참여하여 작성되어 이행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하여 작업계획 의식 수준을 평가 <p>○ 해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는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 계획서 작성 대상 종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중량물 취급 작업 : 크레인, 이동식크레인</td> </tr> <tr> <td>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지게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구내운반차, 컨베이어</td> </tr> <tr> <td>차량계 건설기계 : 굴착기,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td> </tr> <tr> <td>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점보드릴 포함), 롤러 등</td> </tr> <tr> <td>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td> </tr> <tr> <td>터널 굴착 작업, 교량 (높이 5M 이상, 교량 지간 30M 이상)</td> </tr> </table> <p>- 관계자 배치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작업지휘자</th> <th>신호수</th> <th>유도자</th> </tr> </thead> <tbody> <tr> <td>차량계 하역운반기계</td> <td rowspan="2">중량물취급 작업 시</td> <td rowspan="2">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전도 위험 또는 접촉 위험 작업시</td> </tr> <tr> <td>2m 이상 굴착작업</td> </tr> <tr> <td>교량</td> <td rowspan="3">(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카고크레인 등)</td> <td rowspan="3">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위험 작업시</td> </tr> <tr> <td>건축물 해체</td> </tr> <tr> <td>중량물 취급작업</td> </tr> <tr> <td>항타기 조립·이동·해체</td> <td></td> <td></td> </tr> </tbody> </table> <p>※근거 : 산업안전 기준 규칙 제38조~40조</p>	중량물 취급 작업 :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지게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구내운반차, 컨베이어	차량계 건설기계 : 굴착기,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점보드릴 포함), 롤러 등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터널 굴착 작업, 교량 (높이 5M 이상, 교량 지간 30M 이상)	작업지휘자	신호수	유도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취급 작업 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전도 위험 또는 접촉 위험 작업시	2m 이상 굴착작업	교량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카고크레인 등)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위험 작업시	건축물 해체	중량물 취급작업	항타기 조립·이동·해체			면담 (IP)	1. 운전자는 작업계획서 내용을 공유 받고 숙지하고 있음	2				
	중량물 취급 작업 :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지게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구내운반차, 컨베이어																												
차량계 건설기계 : 굴착기,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점보드릴 포함), 롤러 등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터널 굴착 작업, 교량 (높이 5M 이상, 교량 지간 30M 이상)																													
작업지휘자	신호수	유도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취급 작업 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전도 위험 또는 접촉 위험 작업시																											
2m 이상 굴착작업																													
교량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카고크레인 등)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위험 작업시																											
건축물 해체																													
중량물 취급작업																													
항타기 조립·이동·해체																													
		면담 (IP)	2. 신호수 또는 유도자는 작업계획서 내용을 공유 받고 숙지하고 있음	2																									
		실사 (PI)	3. 건설기계 운전자-유도자·신호수 간 소통체계 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 호각·신호봉 (0.5점) - 호각·신호봉 + 무전기(1점)	1																									
					계																								

A-4. 위험상황 대응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2	Yes	No	N/A	
A-4. 위험상황 대응	<p>○ 지표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 상황에 노출된 근로자의 행동을 살펴보고 위험 의식 수준을 평가 <p>○ 해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안전시설 미흡의 대상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안전표지판, 이동통로, 임시소방시설, 낙하물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구름방지설비, 총동방지시설, 찰림방지시설, 불꽃비산방지설비, 소화기, 토사 다이크, 사다리, 계단 출입통제설비, 유도로프, 조도 확보, 적재상태 불량 등 </div> <p>※근거 : 산안법 제51조, 제52조</p>	실사 (PI)	1. 안전시설이 미흡한 상황에서 근로자 작업을 하고 있음 - 작업 단위별 감점: -1 미흡 예)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서 슬라브 철근 배근시 이동통로 미설치 후 작업 -1 점	최대 -4					
		면당 (IP) 서면 (DR)	2.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거나 이행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 중지권 이행은 1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2					
계									

□ B. 관리자 직무 수행

B-1. 작업 안전관리 활동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9	Yes	No	N/A		점수																
B-1. 작업지휘 활동	○ 지표 정의 - 공사담당자의 작업 파악, 지휘, 관리 등을 통한 안전 관리 수준 평가. ○ 해 설 - "공사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공정 및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특히, 본인이 관리하는 공중에 대한 작업 투입 내용, 장비, 인원, 위험성평가 사항들을 숙지하고 점검을 수행해야되며, 점검중 발생 된 유해위험 요인은 위험성평가와 연계되어 위험성을 감소 되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 산안법 제15조, 제36조 건진법 시행령 제102조	면담 (IP)	1. 공사담당자는 ‘작업사항과 위험성평가 내용’ 을 인지하고 있음 ※ 평가자가 점검하는 장소에 대한 답변을 해야된다.	2																						
		면담 (IP) 실사 (PI)	2. 공사담당자는 담당하고 있는 공중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대책을 이행한 실적이 있음 ※ 인정 실적 1)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개선 대책 이행 결과 사진 2) 건진법 자체점검 등 일상점검 중 지적 된 유해·위험요인 개선 대책 이행 결과 사진	1																						
		면담 (IP) 서면 (DR)	3. 공사담당자가 점검중 발견한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평가” 와 연계되어 있음	2																						
		서면 (DR)	4. C. 작업환경, D.가시설·장비 평가 합계를 기준으로 환산 적용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auto;"> <thead> <tr> <th>C+D항목 합계 점수</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td>19점</td><td>4점</td></tr> <tr><td>18점</td><td>3점</td></tr> <tr><td>17점</td><td>2점</td></tr> <tr><td>16점</td><td>1점</td></tr> <tr><td>15점 ~ 14점</td><td>0점</td></tr> <tr><td>13점 ~ 12점</td><td>-1점</td></tr> <tr><td>11점 ~ 10점</td><td>-2점</td></tr> <tr><td>9점 ~ 8점</td><td>-3점</td></tr> <tr><td>7점 미만</td><td>-4점</td></tr> </tbody> </table>	C+D항목 합계 점수	점수	19점	4점	18점	3점	17점	2점	16점	1점	15점 ~ 14점	0점	13점 ~ 12점	-1점	11점 ~ 10점	-2점	9점 ~ 8점	-3점	7점 미만	-4점	4		
C+D항목 합계 점수	점수																									
19점	4점																									
18점	3점																									
17점	2점																									
16점	1점																									
15점 ~ 14점	0점																									
13점 ~ 12점	-1점																									
11점 ~ 10점	-2점																									
9점 ~ 8점	-3점																									
7점 미만	-4점																									
계																										

B-2. 안전점검 활동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4	Yes	No	N/A		점수						
B-2. 안전점검 활동	<p>○ 지표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사 소속 공사참여자가 실시하는 점검 활동의 수준과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환류 체계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p>○ 해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소장)는 소속 직원들이 실시하는 점검 및 개선 활동을 관리해야 한다. - 공사담당자와 안전관리자는 건진법, 산안법 등에 따라 시공성과, 근로자 보호, 기계기구, 건설기계를 성실하게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고 조직 내부에 공유하여 현재 위험요인이 존재함을 알려야 한다. - 또한, 조치 후에도 소장과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위험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리고 유지되도록 노력 해야 한다. <p>- 주체별 주요 점검의 종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공사담당자</td> <td style="width: 50%;">안전관리자</td> </tr> <tr> <td>산안법에 의한 점검</td> <td>산안법에 의한 점검</td> </tr> <tr> <td>건진법에 의한 점검 (안전관리계획서 자체점검 등)</td> <td>-</td> </tr> </table> <p>※근거 : 산안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p>	공사담당자	안전관리자	산안법에 의한 점검	산안법에 의한 점검	건진법에 의한 점검 (안전관리계획서 자체점검 등)	-	면담 (IP) 서면 (DR)	1. 소장은 ‘안전관리자’ 및 공사 담당자(안전관리계획서 자체안전 점검)가 수행하는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있음 ※ 2일 이내 결과만 인정	1						
		공사담당자	안전관리자													
		산안법에 의한 점검	산안법에 의한 점검													
건진법에 의한 점검 (안전관리계획서 자체점검 등)	-															
면담 (IP) 서면 (DR)	2. 점검 결과를 시공사 모든직원과 공유하고 있음 ※ 공유는 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SNS, 자체 어플 등) 실시해야 함	1														
서면 (DR)	3. 전월 안전관리과 안전점검시 지적된 사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적합 사항이 당월 점검 시 반복 발생한 경우, 반복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과한다. ※ 단, 전월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본 항목을 N/A 처리한다	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반복 건수</th> <th>점수</th> </tr> <tr> <td>없음</td> <td>2점</td> </tr> <tr> <td>1건</td> <td>-1점</td> </tr> <tr> <td>2건</td> <td>-2점</td> </tr> </table>	반복 건수	점수	없음	2점	1건	-1점	2건	-2점					
반복 건수	점수															
없음	2점															
1건	-1점															
2건	-2점															
계																

B-3. 위험성평가 감독(감리)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5	Yes	No	N/A	
B-3. 위험성 평가감독 (감리)	<p>○ 지표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사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감독 수준을 평가 <p>○ 해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위험성평가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 - 위험성평가 이행 주체는 시공사임으로, 감리단은 회의가 정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참관하고, 회의중 감리단은 가급적 발언하지 않도록 한다. - 위험성평가 중심의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감리원은 개선대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한다. <p>※근거 : 도기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95조</p>	면담 (IP) 서면 (DR)	1. 안전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회의의 과반수 이상을 참관함 ※ 1주 간격으로 회의시, 월 2회 이상 참관	1					
		면담 (IP) 서면 (DR)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 1회 이상 회의를 참관함 ※ 평가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사진증빙”, “서명부” 제출시 점수 부여	1					
		면담 (IP) 서면 (DR)	3. 시공사의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요인·대책 및 전회차 결과)를 감리단 내부에 공유하며, 해당 자료를 디지털 시스템 또는 문서로 체계적으로 보관·공유하고 있음	1					
		면담 (IP) 서면 (DR)	4. 시공사의 위험성평가 개선 대책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감독 하고있음 ※ 평가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사진증빙” 제출시 점수 부여	2					
					계				

B-4.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감리)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2	Yes	No	N/A	
B-4.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감리)	<p>○ 지표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실시하는 검측 및 시공성과 확인 수준을 평가 <p>○ 해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를 제출 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또한,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p>①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p> <p>②시공 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측업무를 수립된 검측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 사용자재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수관리한다 <p>※근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56조</p>	면담 (IP) 서면 (DR)	<p>1. 시공 및 근로자 안전점검 결과를 사업단 내부에 실시간으로 공유 하고, 시공사와 상호 피드백을 통해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결과 공유 : 1점 - 조치 결과 공유 : 1점 <p>※ 평가일 기준으로 1주일 이내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사진증빙” 제출시 점수 부여</p>	2					
		실사 (PI) 서면 (DR)	<p>2. 본구조물, 가설구조물(흙막이, 동바리, 비계) 등의 시공 확인 업무, 검측, 자재 적정성 확인 등이 미흡한 경우 차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당 : -1점 감점 	최대 -5					
					계				

B-5. 안전문서 작성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4	Yes	No	N/A		점수																										
B-5. 안전문서 작성	<p>○ 지표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진법, 산안법, KOSHA-MS 에서 요구하는 서류 업무 이행에 대하여 시공사, 감리단의 수준을 평가 <p>○ 해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기본은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를 통해 발주청, 감리단, 시공사가 수행해야되는 안전관련 문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행률에 따라 4단계 등급(우수,보통,미흡,심각)으로 [발주자+감리],[시공사]를 각각 평가하고 있음 - 확인방법: ONE-PMIS 건설공사장 CCTV 통합 운영시스템 -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안전 문서 종류 <table border="1"> <tr> <td>안전보건대장(설계기본공사)</td> <td>노사협의체 회의결과</td> </tr> <tr> <td>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계</td> <td>설계안전성검토</td> </tr> <tr> <td>안전보건대장 점검 결과</td> <td>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td> </tr> <tr> <td>유해위험방지계획서</td> <td>안전관리계획서</td> </tr> <tr> <td>산업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td> <td>연간 안전보건활동 계획서</td> </tr> <tr> <td>산업재해 예방지도 보고서</td> <td>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td> </tr> <tr> <td>안전및보건에관한 협의체</td> <td>안전보건활동 확인서</td> </tr> <tr> <td>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결과(건진법)</td> <td>안전보건경영 매뉴얼, 질차서, 지침서</td> </tr> <tr> <td>작업환경측정</td> <td>안전보건경영체계 성과측정</td> </tr> <tr> <td>위험성평가 실시규정</td> <td>비상시 대응훈련 계획서</td> </tr> <tr> <td>위험성평가(최초, 정기, 상시)</td> <td>비상시 대응훈련 결과보고</td> </tr> <tr> <td>위험공중 사전작업 허가서</td> <td>업무분장표(시공사,감리)</td> </tr> </table> <p>※근거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침 (건설정보관리시스템)</p>	안전보건대장(설계기본공사)	노사협의체 회의결과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계	설계안전성검토	안전보건대장 점검 결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산업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연간 안전보건활동 계획서	산업재해 예방지도 보고서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	안전및보건에관한 협의체	안전보건활동 확인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결과(건진법)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질차서, 지침서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경영체계 성과측정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비상시 대응훈련 계획서	위험성평가(최초, 정기, 상시)	비상시 대응훈련 결과보고	위험공중 사전작업 허가서	업무분장표(시공사,감리)	서면 (DR)	<p>1. 안전문서 활동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2점) - 보통 (1점) - 미흡 (-1점) - 심각 (-2점) <p>※ [시공사, 감리단 각각 부여]</p> <p>예) <table border="1"><tr><td>시공사 우수 2점</td></tr><tr><td>감리단 미흡 -1점</td></tr></table> 결과 = 1점</p> <p>※ 문서 작성시 산안법, 건진법에서 규정한 담당이 아닌 자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발되는 경우 “최하점” 으로 부여한다.</p> <p>예) <table border="1"><tr><td>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td></tr><tr><td>안전관리자가 작성시 -2점</td></tr></table></p>	시공사 우수 2점	감리단 미흡 -1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안전관리자가 작성시 -2점	4				
	안전보건대장(설계기본공사)	노사협의체 회의결과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계	설계안전성검토																																			
안전보건대장 점검 결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산업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연간 안전보건활동 계획서																																			
산업재해 예방지도 보고서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																																			
안전및보건에관한 협의체	안전보건활동 확인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결과(건진법)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질차서, 지침서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경영체계 성과측정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비상시 대응훈련 계획서																																			
위험성평가(최초, 정기, 상시)	비상시 대응훈련 결과보고																																			
위험공중 사전작업 허가서	업무분장표(시공사,감리)																																			
시공사 우수 2점																																				
감리단 미흡 -1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안전관리자가 작성시 -2점																																				
					계																															

□ C. 작업 환경

C-1. 안전시설 설치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2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Yes	No	N/A	점수	
C-1. 안전시설 설치	<p>○ 지표 정의</p> <p>- 안전시설물 설치 수행 능력을 평가</p> <p>○ 해 설</p> <p>- 도기본에서 발주한 공사장의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은 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②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도기본)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한다</p> <p>-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물은 적시적소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 안전시설물의 종류 예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안전표지판, 이동통로, 임시소방시설, 낙하물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구름방지설비, 충돌방지시설, 찰림방지시설, 불꽃비산방지설비, 소화기, 토사 다이크, 사다리, 계단 출입통제설비, 유도로프, 조도 확보, 적재상태 불량 등 </div> <p>※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서울시 도기본)</p>	실사 (PI)	1. 설치 규정 미준수 또는 미설치 시 개소당 : -1점 감점	최대 -5					
		서면 (DR)	2. 추락·낙하·전도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공정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구체적인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도면에 도식화하여 시공계획서를 수립·운영하고 있음	2					
					계				

C-2. 시민보호 조치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3	Yes	No	N/A		점수																										
C-2. 시민 보호조치	<p>○ 지표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장 인접 구간에서 이동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이행 수준 평가 <p>○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평가는 공사장 인접 구간의 지반 침하로 인한 도로·보도 변형 및 교통·보행자 사고 등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 안전관리와 교통·보행 안전조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이를 위해 공사장 및 주변 도로·보도에 대한 정기 순찰 및 육안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작업일보에 기록·관리하여 지반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조치하여야 한다. - 특히, 본부 지정 대형 굴착공사장은 GPR 탐사를 통해 지하 공동 및 지반 이완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교통 통제 및 안전시설 보강을 병행하여야 한다. - 또한, 교통 전환 및 도로·보도 임시 점용 구간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통소통 대책 이행, 보행자 안전도우미 배치 등 승인 조건을 철저히 준수·관리하여야 한다. <p>- 교통안전시설 종류 예시</p> <table border="1"> <tr> <td>교통안내표지판</td> <td>비산먼지방지 시설</td> </tr> <tr> <td>과속방지턱</td> <td>콘크리트 방호벽</td> </tr> <tr> <td>속도제한</td> <td>임시 차선 도색</td> </tr> <tr> <td>도로차단 및 출입금지 시설</td> <td>임시 인도 및 차도 구분</td> </tr> <tr> <td>야간 식별 설비</td> <td>단차구간 경계시설</td> </tr> </table> <p>※근거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서울시 도기본) 도로법 시행령 제7조</p>	교통안내표지판	비산먼지방지 시설	과속방지턱	콘크리트 방호벽	속도제한	임시 차선 도색	도로차단 및 출입금지 시설	임시 인도 및 차도 구분	야간 식별 설비	단차구간 경계시설	<p>실사 (PI)</p> <p>서면 (DR)</p>	<p>1.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종합 평가 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를 합산 부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 미흡시 해당 항목 0점 부여 ※ 교통처리계획, 점용허가 등 유관기관 허가조건 기준 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 내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공사장 주변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육안 점검 또는 GPR 탐사 기록 관리 상태</td> <td>1점</td> </tr> <tr> <td>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자 안전도우미 및 도로교통 유도원 배치 상태</td> <td>1점</td> </tr> <tr> <td>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상태</td> <td>1점</td> </tr> </tbody> </table> <p>2. 평가해당 없음(N/A)인 경우, C-1(안전시설), C-3(편의시설), C-4(성과) 점수 합계를 기준으로 환산 적용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C-1 + C-3 + C-4 합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1점 이하</td> <td>0점</td> </tr> <tr> <td>0 ~ 1점</td> <td>1점</td> </tr> <tr> <td>2 ~ 4점</td> <td>2점</td> </tr> <tr> <td>5점 이상</td> <td>3점</td> </tr> </tbody> </table>	평가 내용	점수	공사장 주변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육안 점검 또는 GPR 탐사 기록 관리 상태	1점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자 안전도우미 및 도로교통 유도원 배치 상태	1점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상태	1점	C-1 + C-3 + C-4 합계	점수	- 1점 이하	0점	0 ~ 1점	1점	2 ~ 4점	2점	5점 이상	3점	3				
교통안내표지판	비산먼지방지 시설																																			
과속방지턱	콘크리트 방호벽																																			
속도제한	임시 차선 도색																																			
도로차단 및 출입금지 시설	임시 인도 및 차도 구분																																			
야간 식별 설비	단차구간 경계시설																																			
평가 내용	점수																																			
공사장 주변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육안 점검 또는 GPR 탐사 기록 관리 상태	1점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자 안전도우미 및 도로교통 유도원 배치 상태	1점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상태	1점																																			
C-1 + C-3 + C-4 합계	점수																																			
- 1점 이하	0점																																			
0 ~ 1점	1점																																			
2 ~ 4점	2점																																			
5점 이상	3점																																			
계																																				

C-3. 근로자 편의시설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3	Yes	No	N/A	
C-3. 근로자 편의시설	<p>○ 지표 정의</p> <p>-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수준과 운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p> <p>○ 해 설</p> <p>- 본 지표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편의시설의 실질적인 확보 및 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p> <p>- 편의시설은 피로 저감과 위생 유지, 휴식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집중력과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며, 이는 추락·끼임·충돌 등 주요 사고 예방의 기초 여건에 해당한다. 이에 본 평가는 시설의 형식적 설치 여부가 아닌, 실제 사용 가능성과 관리 상태를 중심으로 작업환경 개선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p> <p>※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법시행령 제4조, 산안법 제128조의 2, 산안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장 제21조~제30조</p>	실사 (P1)	<p>1. 편의시설은 설치 종류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각 시설물이 수도·전기가 미연결되어 있거나 청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0점을 부여한다.</p> <p>- 휴게시설 (1 점)</p> <p>- 화장실 (1점)</p> <p>- 세면시설 (1점)</p> <p>※ 단기 도로 공사 인해 상수도 사용 불가 등 합리적인 이유로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은 결측 처리한다.</p>	3					
					계				

C-4.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성과 (가·감점 평가 항목)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	Yes	No	N/A		점수									
C-4.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성과	<p>○ 지표 정의</p> <p>- 본 지표는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 활동과 안전 관리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무재해 지속기간, 안전관리 우수사례, 재해 발생 현황을 반영하여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하는 항목이다.</p> <p>○ 해 설</p> <p>- 기존의 안전관리 평가는 점검·형식 중심의 관리로 인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성과 개선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지표는 무재해 지속성과 우수사례에는 가점을, 재해 발생 및 사고 은폐·지연보고 등 안전관리 부실 행위에는 감점을 적용하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 특히, 사고 발생일 기준 3개월 반복 감점 구조를 적용하여 사고 이후 지속적인 관리 수준과 개선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현장 행동 변화와 재해 예방 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p>	서면 (DR)	<p>1. 무재해 지속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무재해기간</th> <th>가점</th> </tr> </thead> <tbody> <tr> <td>6개월이상 ~ 12개월 미만</td> <td>0.5점</td> </tr> <tr> <td>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td> <td>1점</td> </tr> <tr> <td>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td> <td>1.5점</td> </tr> <tr> <td>24개월 이상</td> <td>2점</td> </tr> </tbody> </table>	무재해기간	가점	6개월이상 ~ 12개월 미만	0.5점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1점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1.5점	24개월 이상	2점	2					
		무재해기간	가점																
		6개월이상 ~ 12개월 미만	0.5점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1점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1.5점																		
24개월 이상	2점																		
서면 (DR) 실사 (PI)	<p>2.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평가과정에서 확인 한 경우 1점을 가점으로 부여한다. (최대1점)</p>	1																	
서면 (DR)	<p>3. 재해 발생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을 부여하며, 감점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실시되는 지수평가에 동일하게 반복 적용한다.(최대 -30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재해 구분</th> <th>건당 감점</th> </tr> </thead> <tbody> <tr> <td>사망재해</td> <td>10점</td> </tr> <tr> <td>일반재해</td> <td>3점</td> </tr> <tr> <td>사고은폐/지연보고</td> <td>5점</td> </tr> </tbody> </table>	재해 구분	건당 감점	사망재해	10점	일반재해	3점	사고은폐/지연보고	5점	-30									
재해 구분	건당 감점																		
사망재해	10점																		
일반재해	3점																		
사고은폐/지연보고	5점																		
계																			

□ D. 가시설·장비

D-1. 가설구조물 관리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	Yes	No	N/A	
D-1. 가설 구조물 관리	○ 지표 정의 - 가설구조물에 대한 시공 관리 수준을 평가	실사 (PI) 서면 (DR)	1. 규정 미준수 또는 일부 부재 설치 누락 개소당 : -1 점	최대 - 5					
	○ 해 설 - 시공사는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 세도면, 관계전문가가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등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 술인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계획서와 일치하게 시공해야 한다 -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2. 상세도면 미확보 개소당 : -3 점	최대 - 6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높이 2미터 이상인 흠막이 지보공 라이닝폼, 가설밴트, 작업대차, 슬립폼, 갱폼 함벽지지대, FCM, ILM, MSS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및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그밖의 발주청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3. 구조계산서 미확보 개소당 : -5점	최대 - 10						
※근거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 2									
					계				

D-2. 건설기계 감독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4	Yes	No	N/A		점수										
D-2. 건설기계 감독 (감리)	<p>○ 지표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반입시 및 사용에 대한 건설기술사업 관리단의 안전관리 감독 수준을 평가 <p>○ 해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계가 현장에 반입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지도 감독 하고 수시로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대상 건설기계 및 검토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대 상</th> <th style="width: 50%;">검토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천공기</td> <td>장비등록증 (신규, 변경, 구조변경 여부)</td> </tr> <tr> <td>항타 및 항받기</td> <td>작업계획서</td> </tr> <tr> <td>타워크레인</td> <td>보험증</td> </tr> <tr> <td>기중기</td> <td>운전면허증</td> </tr> <tr> <td>굴착기</td> <td>교육이수증 등</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사용시 안전규정에 맞는 방호장치를 설치 하고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며 사용해야 한다. <p>※근거 :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지침(도기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기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 제95조</p>	대 상	검토사항	천공기	장비등록증 (신규, 변경, 구조변경 여부)	항타 및 항받기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보험증	기중기	운전면허증	굴착기	교육이수증 등	<p>실사 (PI)</p> <p>1. 건설기계 사용시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개소당 : -1 점</p>	최대 -4					
		대 상	검토사항																	
		천공기	장비등록증 (신규, 변경, 구조변경 여부)																	
항타 및 항받기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보험증																			
기중기	운전면허증																			
굴착기	교육이수증 등																			
<p>서면 (DR)</p> <p>2. 반입 예정인 건설기계의 관계 서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사전 검토하고 있음</p> <p>※ 가장 최근에 반입 된 건설 기계를 기준으로 하며, 반입 일과 서류 확인일을 비교한다</p>	2																			
<p>서면 (DR) 실사 (PI)</p> <p>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기계 반입 안전점검 감독 방법에 따라 차등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자가 실시한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음: 1점 - 기술인과 시공자가 합동으로 점검 실시: 2점 <p>※ 가장 최근에 발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직접 현장 확인 한 사항은 “사진증빙” 제출시 점수 부여한다</p>	2																			
계																				

D-3. 공도구 점검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5	Yes	No	N/A		점수							
D-3. 공도구 점검	<p>○ 지표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 반입 및 사용에 대한 안전 수준을 평가 <p>○ 해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소장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해야 한다 - 공사담당자는 기계·기구 방호장치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사용금지 조치 등을 해야 한다. - 안전관리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와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을 해야 한다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 기계·기구의 종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핸드그라인더</td> <td style="text-align: center;">고속절단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용접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철근절곡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중 펌프</td> <td style="text-align: center;">철근절단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압살수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동식 발전기, 전선 등</td> </tr> </table> <p>※근거 : 산안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64조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도기본)</p>	핸드그라인더	고속절단기	용접기	철근절곡기	수중 펌프	철근절단기	고압살수기	이동식 발전기, 전선 등	실사 (PI)	1. 안전조치 미 실시 : 개수당 -1	최대 -5					
		핸드그라인더	고속절단기														
		용접기	철근절곡기														
		수중 펌프	철근절단기														
고압살수기	이동식 발전기, 전선 등																
실사 (PI)	2. 기계·기구 점검 후 인증 표식 부착 ※ 인증표에는 점검월, 점검자가 표시 되어야 한다 ※ 점검중 인증표식 미부착 발견시 0점	1															
면담 (IP) 실사 (PI)	3. 기계·기구 점검 실시자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 안전관리자 실시 (1점) - 공사담당자 등 실시 (2점) ※ 공사담당자 등이 실시한 점검은 수행한 결과 “사진” 증빙 제출시 인정함	2															
면담 (IP)	4. 공사담당자는 기계·기구에 대한 전기적·물리적 점검방법을 설명 할 수 있음	2															
					계												

D-4. 스마트 안전기술 설치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2	Yes	No	N/A		점수								
D-4. 스마트 안전기술 설치	<p>○ 지표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안전기술 중 이동형 CCTV 활용 수준을 평가 <p>○ 해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장방침 제39195호(2022.12.20.)에 따라 본부 모든 공사장은 이동식 360° 카메라를 필수로 도입해야 된다 - 주요 목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1. 위험작업, 화재상황 등 영상 기반 모니터링 (본부 위험공종 사전허가제 대상 작업 촬영)</td></tr> <tr><td>2. 무선 전원 및 통신을 이용한 사각지대 작업 촬영</td></tr> <tr><td>3. 360° 파노라마 영상 촬영 및 실시간 원격 점검</td></tr> <tr><td>4. 작업자 실시간 위험 행위분석 및 경고 방송 지원</td></tr> </table> - CCTV 장비 최소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1. 유효화소 200만, 가시거리 35m, 광학렌즈 20배줌</td></tr> <tr><td>2. 이동식 거치형 장비 (15kg 미만 권장)</td></tr> <tr><td>3. 일 8시간 이상 배터리 겸용 사용 가능한 전원 방식</td></tr> <tr><td>4. 저장용량 128GB 이상, 10일 이상 저장 가능</td></tr> <tr><td>5. 방진 방수 기능 (IP54 이상)</td></tr> </table> <p>※근거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침</p>	1. 위험작업, 화재상황 등 영상 기반 모니터링 (본부 위험공종 사전허가제 대상 작업 촬영)	2. 무선 전원 및 통신을 이용한 사각지대 작업 촬영	3. 360° 파노라마 영상 촬영 및 실시간 원격 점검	4. 작업자 실시간 위험 행위분석 및 경고 방송 지원	1. 유효화소 200만, 가시거리 35m, 광학렌즈 20배줌	2. 이동식 거치형 장비 (15kg 미만 권장)	3. 일 8시간 이상 배터리 겸용 사용 가능한 전원 방식	4. 저장용량 128GB 이상, 10일 이상 저장 가능	5. 방진 방수 기능 (IP54 이상)	<p>실사 (PI)</p>	<p>1. CCTV 운영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형 스마트 CCTV는 위험작업허가대상 작업 장소를 촬영하고 있음 (1점) - 도시기반시설본부 CCTV통합 운영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음 (1점) 	2					
1. 위험작업, 화재상황 등 영상 기반 모니터링 (본부 위험공종 사전허가제 대상 작업 촬영)																		
2. 무선 전원 및 통신을 이용한 사각지대 작업 촬영																		
3. 360° 파노라마 영상 촬영 및 실시간 원격 점검																		
4. 작업자 실시간 위험 행위분석 및 경고 방송 지원																		
1. 유효화소 200만, 가시거리 35m, 광학렌즈 20배줌																		
2. 이동식 거치형 장비 (15kg 미만 권장)																		
3. 일 8시간 이상 배터리 겸용 사용 가능한 전원 방식																		
4. 저장용량 128GB 이상, 10일 이상 저장 가능																		
5. 방진 방수 기능 (IP54 이상)																		
					계													

□ E. 고위험 관리

E-1. 위험작업허가제 시행(시공사)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6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Yes	No	N/A	점수	
E-1. 위험작업 허가제 시행 (시공사)	○ 지표 정의 - 시공사의 위험작업 허가제도 이행 수준을 평가	면담 (IP)	1. 현장소장은 오늘의 위험작업 허가 대상 작업 내용(위치, 인원, 대책 등)을 인지하고 있음	2					
	○ 해 설 - 위험작업 허가 대상 작업 (도기본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험성평가에서 결정된 최상위 위험 등급 중 1개 이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허가 대상 작업으로 지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위험성평가 적용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마다 1개 이상의 위험요인을 지정하여 관리 · 수시 위험성평가 적용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평가 시기 마다 1개 이상의 위험요인을 지정하여 관리 ② 가설 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벤트 설치 및 해체 작업 · 공중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 · 터널 수직구 워킹타워 조립 및 해체 작업 · 모더 등을 사용하는 흙막이가시설 해체 작업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 (상승 포함) ③ 건설·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 · 항다 및 항발기 조립 및 해체 작업 · 100톤 이상 이동식 크레인 조립 및 해체 작업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사람탑승(맨케이지 등) 작업 ④ 고소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비계 사용 작업 · 높이 4M 이상 가설방음벽 및 방음판 설치 및 해체 작업 ⑤ 화기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 (반경 5m 이내 가연성물질 존재하는 장소) ※가연성물질: 단열재, 스티로폼, 유류, 종이, 목재 등 ⑥ 야간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포장 작업 	실사 (PI) 서면 (DR)	2. 현장소장은 위험작업허가 대상작업을 지휘하는 공사담당자에게 허가서의 위험요소 개선대책(허가조건)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음 ※ 개선 결과가 포함된 증빙만 인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건설·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 · 항다 및 항발기 조립 및 해체 작업 · 100톤 이상 이동식 크레인 조립 및 해체 작업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사람탑승(맨케이지 등) 작업 ④ 고소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비계 사용 작업 · 높이 4M 이상 가설방음벽 및 방음판 설치 및 해체 작업 ⑤ 화기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 (반경 5m 이내 가연성물질 존재하는 장소) ※가연성물질: 단열재, 스티로폼, 유류, 종이, 목재 등 ⑥ 야간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포장 작업 	서면 (DR)	3. 흙막이가시설 굴착 단계별 지도 점검 시행 계획을 공정표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굴착 구간별 굴착 전·후 안전과 컨설팅 요청(예정)일정과 지도 점검 결과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어야함	1						
계									

E-2. 위험공중 작업 감독(감리)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6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Yes	No	N/A	점수						
E-2. 위험공중 작업 감독 (감리)	<p>○ 지표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험작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단 이행 수준을 평가 <p>○ 해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사 추진시에는 건진법에 따라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은 위험작업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험공중 작업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검토·확인 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 위험공중 작업 대상 (건진법)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td>① 2m 이상의 고소작업</td></tr> <tr><td>②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td></tr> <tr><td>③ 철골 구조물 공사</td></tr> <tr><td>④ 2m이상의 외부 도장 공사</td></tr> <tr><td>⑤ 승강기 설치공사</td></tr> </table> <p>※근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 제86조</p>	① 2m 이상의 고소작업	②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③ 철골 구조물 공사	④ 2m이상의 외부 도장 공사	⑤ 승강기 설치공사	면담 (IP)	1. 위험공중 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을 제출받고 검토·확인하고 있음	1					
		① 2m 이상의 고소작업												
		②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③ 철골 구조물 공사														
④ 2m이상의 외부 도장 공사														
⑤ 승강기 설치공사														
면담 (IP)	2.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험공중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알고 있음	2												
서면 (DR)	3. 건설사업관리단의 위험작업 계획 이행실태 감독 수준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 서면으로 결과 확인: 2점 - 기술인이 직접 현장 확인: 3점 ※ 가장 최근에 발생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직접 현장 확인한 사항은 “사진증빙” 제출시 점수 부여한다.	3												
계														

E-3. 복합 공종의 안전업무 조정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4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Yes	No	N/A	점수																							
E-3. 복합 공종의 안전업무 조정	<p>○ 지표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발주사업에 대한 감리단의 안전업무 조정 수준을 평가 <p>○ 해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 도기본 사업장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안전 보건조정자로 선임한다 -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① 혼재된 위험작업 파악 활동에 관한 사항</td></tr> <tr><td>② 혼재된 위험작업의 위험성 파악에 관한 사항</td></tr> <tr><td>③ 혼재된 위험작업의 시기·내용에 관한 사항</td></tr> <tr><td>④ 위험작업의 안전조치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td></tr> <tr><td>⑤ 각각의 공사 도급인과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td></tr> </table> <p>※근거 : 안전보건경영매뉴얼, 산안법 제68조</p>	① 혼재된 위험작업 파악 활동에 관한 사항	② 혼재된 위험작업의 위험성 파악에 관한 사항	③ 혼재된 위험작업의 시기·내용에 관한 사항	④ 위험작업의 안전조치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⑤ 각각의 공사 도급인과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서면 (DR)	<p>1. 분리발주 현장을 대상으로 복합 공종 안전업무 조정체계 운영 실태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복합공종 평가내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분리발주 현장소장 과반수 이상 참여한 안전보건조정회의 개최</td> <td>1점</td> </tr> <tr> <td>분리발주 업체 간 주간 작업계획 공유 및 조정 관리</td> <td>1점</td> </tr> <tr> <td>혼재작업 위험요인, 작업시기, 안전조치 내용 회의록 기록·관리</td> <td>1점</td> </tr> <tr> <td>회의 결과 발주청 공유</td> <td>1점</td> </tr> </tbody> </table> <p>※ 복합공종 해당 없음(N/A)인 경우, E-1(위험작업허가제 시행) 및 E-2(위험공종 작업 감독) 점수 합계를 기준으로 환산 적용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E-1 + E-2 합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0 ~ 4점</td> <td>2점</td> </tr> <tr> <td>5 ~ 8점</td> <td>3점</td> </tr> <tr> <td>9 ~ 12점</td> <td>4점</td> </tr> </tbody> </table>	복합공종 평가내용	점수	분리발주 현장소장 과반수 이상 참여한 안전보건조정회의 개최	1점	분리발주 업체 간 주간 작업계획 공유 및 조정 관리	1점	혼재작업 위험요인, 작업시기, 안전조치 내용 회의록 기록·관리	1점	회의 결과 발주청 공유	1점	E-1 + E-2 합계	점수	0 ~ 4점	2점	5 ~ 8점	3점	9 ~ 12점	4점	4				
	① 혼재된 위험작업 파악 활동에 관한 사항																														
② 혼재된 위험작업의 위험성 파악에 관한 사항																															
③ 혼재된 위험작업의 시기·내용에 관한 사항																															
④ 위험작업의 안전조치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⑤ 각각의 공사 도급인과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복합공종 평가내용	점수																														
분리발주 현장소장 과반수 이상 참여한 안전보건조정회의 개최	1점																														
분리발주 업체 간 주간 작업계획 공유 및 조정 관리	1점																														
혼재작업 위험요인, 작업시기, 안전조치 내용 회의록 기록·관리	1점																														
회의 결과 발주청 공유	1점																														
E-1 + E-2 합계	점수																														
0 ~ 4점	2점																														
5 ~ 8점	3점																														
9 ~ 12점	4점																														
계																															

□ F. 작업계획

F-1. 작업계획 소통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3	Yes	No	N/A	
F-1. 작업계획 소통	○ 지표 정의 - 시공사의 명일 및 당일 작업일정 관리 수준을 평가 ○ 해 설 - 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시공사는 직원 전체 회의 등을 통하여 투입인원, 장비, 작업사항을 도출되고 결과가 전원에게 소통되어야한다. ※근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 제86조	면담 (IP) 서면 (DR)	1. 시공사는 명일 작업 상세일정을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 모든 직원들에게 사전 공유하고 있음 ※ 공유사항: 작업인원·내용·장비, 고위험 작업계획 등	1					
		서면 (DR)	2. 전일 공유한 내용이 ONE-PMIS 공정보고현황과 90% 이상 일치	1					
		서면 (DR)	3. 계획 대비 공정률 95% 이상	1					
					계				

F-2. 사전 작업 협의(감리)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3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Yes	No	N/A	점수	
F-2. 사전 작업 협의 (감리)	<p>○ 지표 정의</p> <p>- 건설사업관리단의 작업 일정 감독 수준을 평가</p> <p>○ 해 설</p> <p>-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중,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 감독해야 한다.</p> <p>※근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6조</p>	면담 (IP) 서면 (DR)	<p>1. 감리단이 시공사의 명일 작업 내용을 인지하는 방식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p> <p>- 주간·월간 공정표를 통해 명일 작업내용을 확인 (0.5점)</p> <p>- 명일 작업내용을 하루 전까지 SNS, 공사일보를 통해 사전에 공유받아 확인 (1점)</p>	1					
		서면 (DR)	<p>2.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고 있음</p> <p>※ 협의 내용을 기록·관리시 인정</p>	2					
					계				

F-3. 시공·작업계획서 수립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7	Yes	No	N/A		점수																																		
F-3. 시공 계획서 수립	<p>○ 지표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의 계획 수준을 평가 <p>○ 해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해당 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단은 계획서를 7일 안에 검토·확인하고 승인 또는 부적정 등의 통보해야 한다 -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종류(산안법) <table border="1"> <tr> <td>중량물 취급 작업 : 크레인, 이동식크레인</td> </tr> <tr> <td>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지게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구내운반차, 컨베이어</td> </tr> <tr> <td>차량계 건설기계 : 굴착기,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td> </tr> <tr> <td>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정보드릴 포함), 롤러 등</td> </tr> <tr> <td>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td> </tr> <tr> <td>터널 굴착 작업, 교량(높이 5M 이상, 교량 지간 30M 이상)</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계획서 작성 대상 종류(건진법) <table border="1"> <tr> <td>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따라 작성</td> </tr> <tr> <td>- 관계자 배치 기준</td> </tr>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작업지휘자</th> <th>신호수</th> <th>유도자</th> </tr> </thead> <tbody> <tr> <td>차량계하역운반기계 2m 이상 굴착작업</td> <td>중량물취급 작업 시</td> <td>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전도 위험 또는 접촉 위험 작업시</td> </tr> <tr> <td>교량</td> <td>(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카고크레인 등)</td> <td>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위험 작업시</td> </tr> <tr> <td>구축물 해체</td> <td></td> <td></td> </tr> <tr> <td>중량물 취급작업</td> <td></td> <td></td> </tr> <tr> <td>항타기 조립·이동·해체</td> <td></td> <td></td> </tr> </tbody> </table> <p>※근거 : 산업안전 기준 규칙 제38조~40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1조</p>	중량물 취급 작업 :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지게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구내운반차, 컨베이어	차량계 건설기계 : 굴착기,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정보드릴 포함), 롤러 등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터널 굴착 작업, 교량(높이 5M 이상, 교량 지간 30M 이상)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따라 작성	- 관계자 배치 기준	작업지휘자	신호수	유도자	차량계하역운반기계 2m 이상 굴착작업	중량물취급 작업 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전도 위험 또는 접촉 위험 작업시	교량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카고크레인 등)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위험 작업시	구축물 해체			중량물 취급작업			항타기 조립·이동·해체			서면 (DR)	<p>1. 시공사가 건설사업관리단에 시공 계획서를 제출한 기한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 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미제출</td> <td>-3</td> </tr> <tr> <td>0~10일 전 제출</td> <td>1</td> </tr> <tr> <td>11~29일 전 제출</td> <td>2</td> </tr> <tr> <td>30일 전 제출</td> <td>3</td> </tr> </tbody> </table> <p>※ (시공사)공문발송, (사업단)점수를 기준으로 한다.</p> <p>※ 작업내용 변경되어 개정해야 되는 경우도 포함</p>	구분	점수	미제출	-3	0~10일 전 제출	1	11~29일 전 제출	2	30일 전 제출	3	3				
	중량물 취급 작업 :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지게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구내운반차, 컨베이어																																											
차량계 건설기계 : 굴착기,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정보드릴 포함), 롤러 등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터널 굴착 작업, 교량(높이 5M 이상, 교량 지간 30M 이상)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따라 작성																																												
- 관계자 배치 기준																																												
작업지휘자	신호수	유도자																																										
차량계하역운반기계 2m 이상 굴착작업	중량물취급 작업 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전도 위험 또는 접촉 위험 작업시																																										
교량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카고크레인 등)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위험 작업시																																										
구축물 해체																																												
중량물 취급작업																																												
항타기 조립·이동·해체																																												
구분	점수																																											
미제출	-3																																											
0~10일 전 제출	1																																											
11~29일 전 제출	2																																											
30일 전 제출	3																																											
	서면 (DR) 면당 (IP)	2. 계획서는 '작업을 실제 지휘자 하는 자' 가 주관하여 작성함	1																																									
	서면 (DR)	<p>3. 계획서는 기술 안전 검토가 포함되어 있음</p> <p>※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차량형) : 접지압, 인양하중</p> <p>※ 항타&항발기, 천공기, 펌프카 : 접지압</p> <p>※ 굴착기, 지게차: 인양하중</p> <p>※ 수치화 된 검토를 말한다</p>	3																																									
					계																																							

G. 안전교육

G-1. TBM 활동 수준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3	Yes	No	N/A		점수																			
G-1. TBM 활동 수준	<p>○ 지표 정의</p> <p>- 시공사의 T.B.M 활동 수준을 평가</p> <p>○ 해 설</p> <p>- TBM이란?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 전에 공중별로 TBM 리더(관리자, 작업반장, 팀장 등)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의 내용과 주의사항, 시공시 주의사항, 안전 작업 절차 등에 대해 빠르고 쉽게 서로 확인 및 의논하는 위험예지 활동을 말한다.</p> <p>- TBM 운영 절차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사전준비 (작업전일)</th> <th colspan="3">실행 (작업당일)</th> <th>환류조치 (작업당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8:00</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07:00 ~ 7: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7:00</td> </tr> <tr> <td>작업방법 시공도면 위험성 평가 등 자료준비</td> <td>건강상태 개인보호구 착용상태</td> <td>작업방법 위험성평가 시공방법 공유</td> <td>숙지 여부 확인 구호 복창</td> <td>문제점 취합 결과 피드백 기록보관</td> </tr> <tr> <td>TBM리더</td> <td>근로자 상호 확인</td> <td>TBM 리더</td> <td>리더 및 근로자</td> <td>TBM리더</td> </tr> </tbody> </table> <p>※근거 : 건진법 시행령 제103조, 산안법 제36조</p>	사전준비 (작업전일)	실행 (작업당일)			환류조치 (작업당일)	~18:00	07:00 ~ 7:10			17:00	작업방법 시공도면 위험성 평가 등 자료준비	건강상태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작업방법 위험성평가 시공방법 공유	숙지 여부 확인 구호 복창	문제점 취합 결과 피드백 기록보관	TBM리더	근로자 상호 확인	TBM 리더	리더 및 근로자	TBM리더	면담 (IP)	<p>1. T.B.M 전파 방법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 한다</p> <p>- “구두” 로만 T.B.M. 활동을 수행함 (0.5점)</p> <p>- 도면, 계획서, 위험성평가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T.B.M. 활동을 수행함 (1점)</p> <p>※ 근로자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p>	1					
		사전준비 (작업전일)	실행 (작업당일)			환류조치 (작업당일)																							
		~18:00	07:00 ~ 7:10			17:00																							
작업방법 시공도면 위험성 평가 등 자료준비	건강상태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작업방법 위험성평가 시공방법 공유	숙지 여부 확인 구호 복창	문제점 취합 결과 피드백 기록보관																									
TBM리더	근로자 상호 확인	TBM 리더	리더 및 근로자	TBM리더																									
서면 (DR)	<p>2. T.B.M 활동 결과를 기록·관리 하고 있음</p> <p>※ 기록에는 TBM 리더 이름, 참여 근로자의 이름, 시간, 전파내용, 최종 결재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p>	1																											
서면 (DR)	<p>3. T.B.M 활동시 안전대 포함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참석하고 있으며, 보호구 체결 상태를 상호 점검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p> <p>※ 평가 당일 T.B.M 사진 확인</p>	1																											
계																													

G-2. 교육 활동 수준

구 분	지표 정의 및 해설	평가 방법		배점	결 과				평가자 기록									
		형식	기준		7	Yes	No	N/A		점수								
G-2. 교육 활동 수준	<p>○ 지표 정의</p> <p>- 시공사와 감리단의 안전교육 여건과 수준을 평가</p> <p>○ 해 설</p> <p>-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시간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4],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를 참고한다.</p> <p>- 관계 법령별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50%;">산업안전보건법</th> <th style="width: 50%;">건설기술진흥법</th> </tr> <tr> <td>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td>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공사팀 (관리감독자)</td> </tr> <tr> <td>② 관리감독자</td> </tr> <tr> <td>③ 안전관리자</td> </tr> <tr> <td>④ 보건관리자</td> </tr> <tr> <td>⑤ 안전공단 강사요원 교육 이수</td> </tr> <tr> <td>⑥ 산업안전지도사 등</td> </tr> </table> <p>※근거 : 산안법 제29조, 건진법 시행령 제103조</p>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팀 (관리감독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④ 보건관리자	⑤ 안전공단 강사요원 교육 이수	⑥ 산업안전지도사 등	실사 (PI)	1. 교육 환경 확보 상태에 따라 합산 부여 한다 - 시청각 설비를 구비함(0.5점) - 별도의 교육 장소가 존재함(0.5점)	1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팀 (관리감독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④ 보건관리자																		
⑤ 안전공단 강사요원 교육 이수																		
⑥ 산업안전지도사 등																		
서면 (DR)	2. 특별교육 대상별 교안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 작업 특성에 맞게 편집한 교안을 활용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시공계획서 등과 병합한 자료 등	1																
서면 (DR)	3. 책임건설사업관리자는 감리단 직원, 시공자, 하도급사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있음	1																
면담 (IP) 서면 (DR)	4. 교육 강사에 따라 차등 부여 한다 - 안전관리자 (1점) - 공사담당자 (협력업체 포함) (2점) - 현장소장 (3점) - 외부강사 (4점) ※ 특별 교육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소장은 정기·특별교육만 인정한다 ※ 사진증빙 제출시 인정 ※ 최근 1개월이내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외부강사는 6개월이내 실적이며, 점검, 컨설팅 점검결과 강평 등은 제외함	4																
계																		